



## 행동 강령이란?

부패 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원·교직원·직무 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

## 공정한 직무 수행

- ✓ 상급자는 **부당한 지시** 금지 (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사항)
- ✓ 예산의 **목적 외 사용** 금지
- ✓ **특혜 배제, 인사 청탁** 금지
- ✓ **노무 또는 조언·자문 제공** 금지

\* 4촌 이내 친족 직무관련자

\* 2년 내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

## 부당이득 수수 금지

### ●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금지

-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·계시 금지
- 유가증권·부동산 등 거래 투자 돕는 행위 금지
- 차량·부동산 등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사적 용도로 사용 금지
-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 금지

### ●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금지

- 금전·유가증권·부동산·회원권 등 재산의 이익
- 음식, 주류, 골프, 여행 등 접대·향응 편의 제공
- 채무 면제, 취업 제공 등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

### 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기준

- 공직자 등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
직무와 무관한 동일인으로부터 **1회 100만 원, 회계연도 내 300만 원**을 초과하는 금품 등  
※ 공직자 등의 배우자 또한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
- 공직자 등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금지  
공직자 등뿐 아니라, 일반인이 제공한 경우도 처벌 대상

###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

(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, 의례·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·선물 상한액 조정)

구분	기존	변경
경조사비	10만원	<b>5만원</b> (화환조화 10만원)
선물	5만원	<b>5만원</b> (농수산물가공품 15만원)
음식물	3만원	<b>3만원</b> (기존 동일)

1.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
2. 원활한 직무수행·사교·의례·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
3. 정당한 권원(權原)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4.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
5.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,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·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
6.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금품 등
7.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
8. 그 밖에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
9. 5만원 이하의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

##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

### ●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

#### 1. 외부 강의 등의 범위

외부강의 등이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,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을 의미

#### 2. 신고 대상

- **사례금을 받는**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 신고
-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**10일 이내**에 신고

▶ **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: 100만 원 (강의 등 경우 1시간당 100만 원,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 원)**

#### 3. 외부강의 신고 기준

- 외부 강의 마친 날부터 **10일 이내** 신고
-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**2일 이내**
- 신고 사항을 확인한 후 **7일 이내**에 반환
- 월 3회 초과는 법인·이사장에게 승인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받은 강의는 횡수에 미포함)

#### 4. 신고 절차

차세대 포털시스템 → 기본 업무 → 기획 → 외부강의 등 신청 → 신규 버튼 클릭 → 신고서 작성 후 제출

### ●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

- 경조사의 통지 제한
-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

## 행동 강령 위반 시 조치!

### ● 위반 시 법인 이사장, 행동 강령 책임관,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가능

- 조사 위원회 구성 (3인 이상)
- 제공받은 자 제공자에게 통보
- 신고자에게는 인사 우대 등의 포상